

2015년 9급 형사소송법개론

총평 - 2015년 9급 형사소송법 개론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어 평이한 문제가 많았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따라서 85점 정도면 무난한 점수이고 90점이 넘어가면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없었던 관계로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별 기출분포도

1편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문제,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문제, 3편 수사와 공소: 8문제, 4편 공판: 6문제, 5편 상소: 3문제

문제유형

판례문제 15문제

조문문제 4문제

사례문제 1문제

문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 ③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답. 2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大判 2001.11.30, 선고 2001도5225). - 이승준 형사소송법 91p

문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

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답. 4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은 1심 합의부에서 심판하면 된다.(대판 2013.4.25, 2013도1658). - 이승준 형사소송법 57p.

문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더라도 무효이다.
-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답. 3

해설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 법원으로서의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大判 2003.11.14. 2003도2735). - 이승준 형사소송법 159p

②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大判 2009.11.19, 2009도6058 全合). - 이승준 형사소송법 195p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다(대판 2012.4.26, 2012도1225) - 이승준 형사소송법 603p

문 4.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 2

해설 ②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중 어느 한쪽에게 대해서만 송달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2013.7.13, 2013도5165) - 이승준 형사소송법 500p

문 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답. 3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14) - 이승준 형사소송법 726p.

문 6.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노인성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ㄴ. 피해자인 증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 ㄷ.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ㄹ. 증인이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ㄷ, ㄹ ④ ㄱ, ㄷ, ㄹ

답. 2

해설 이승준 형사소송법 709-710p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ㄱ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大判 1992.3.13, 91도2281)

ㄴ •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大判 1997.7.11, 97도1097)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ㄴ •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大判 1999.4.23, 99도915)

ㄷ •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2012.5.17, 2009도6788 全合).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피의자는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답. 4

해설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의2 제2항) - 이승준 형사소송법 619p

문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답. 3

해설

③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은 검증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영장없는 채혈도 가능하다. 영장없는 채혈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영치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 영치는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적법한 영치라 할 수 없다.(대판 2012.11.15, 2011도 15258) - 이승준 형사소송법 375p

문 9.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

- | | |
|----------------------|--------------------|
| ① 2014. 4. 15. 10:00 | 2014. 4. 22. 24:00 |
| ② 2014. 4. 16. 12:00 | 2014. 4. 22. 24:00 |
| ③ 2014. 4. 16. 12:00 | 2014. 4. 24. 24:00 |
| ④ 2014. 4. 16. 24:00 | 2014. 4. 24. 24:00 |

답. 3

해설

체포시점은 2014년 4월13일 10시이고 이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의해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청구기간의 만료일은 4월15일 10시가 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이다. 10일의 기산일은 “체포구속된 날” 이므로 2013년 4월 13일이 기산일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10일간 구속기간이므로 만료일은 2013년 4월 22일 24시이다. 다만, 제214조의 2 제13항에 의해 “체포구속 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 까지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여기서는 시간단위로 26시간, 일 단위로는 2일간이 심사기간임 - 즉 시간단위계산 일 때는 26시간, 일월연 단위 계산일 때는 2일간을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시간단위 계산이므로 2014. 4. 16. 12:00가 되며 ㉡ 구속기간의 만료일은 2014. 4. 24. 24:00가 된다.

- 이승준 형사소송법 303p

문 10.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③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답. 1

해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취지와 법률심인 대법원의 적정한 기능 수행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大判 2008.7.24, 2007도6721). - 이승준 형사소송법 900p

문 11. 형사소송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답. 1

해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憲裁 1993.3.11, 92헌마48). - 이승준 형사소송법 579p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답. 4

해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참여권은 변호인만 포함되며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제외된다. 다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34). 고 규정하므로 변호인이 되려는자도 포함됨에 주의! - 이승준 형사소송법 243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 이승준 형사소송법 243p

③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소송계속 중(공소제기 후)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35-②) - 이승준 형사소송법 125p

④ 대판 2007.7.26, 2007도3906 - 이승준 형사소송법 144p

문 13.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답. 4

해설

④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무죄이다. 이 경우 현행범체포의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이다.(대판 2011.5.26, 2011도382) - 이승준 형사소송법 275p

문 14.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답. 1

옳은 것- ㄱ, ㄴ

틀린 것- ㄷ, ㄹ

해설

ㄷ. 보석취소사유는 피고인이 도망, 죄증인멸 염려, 소환에 불출석,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때(제102조 제2항) 이므로 “새로운 중요한 증거발견”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승준 형사소송법 323p.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단독부에 관할 한다. 따라서 본안사건을 합의부에서 하더라도 몰수결정은 단독부에서 한다.(대판 2002.5.17, 2001모53) -이승준 형사소송법 325p.

문 15. 공소사실의 특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 ②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 ③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답. 2

해설

②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특정된 경우이다.(대판 2010.4.29, 2010도2556) - 이승준 형사소송법 439p

문 16. 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 (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乙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甲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乙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답. 2

해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大判 2009.10.15, 2009도1889). - 이승준 형사소송법 692p

문 17. 상상적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②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하더라도 적법하다.
- ③ 수죄 중 일부만이 친고죄일 때 친고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친고죄가 중한 죄이더라도 경한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면서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그 무죄 부분까지 전부판단하여야 한다.

답. 4

해설

검사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상고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지만 상고이유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한다(제384조) - 이승준 형사소송법 907p

문 18.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 ②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 ③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 ④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답. 3

해설 - 이승준 형사소송법 833p

- ① 공소기각판결(대판 2005.10.28, 2005도1247)
- ② 공소기각판결(대판 1996.2.23, 96도47)
- ③ 면소판결(대판 1990.3.9, 89도1046)
- ④ 실체재판(대판 2004.9.16, 2001도3206)

문 19.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④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답. 2

해설

형법각칙의 각 본조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각 본조의 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8.21, 71도1334) -이승준 형사소송법 807p

문 20.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③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④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답. 1

해설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하급법원 뿐만 아니라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 자신도 구속된다.(대판 1987.4.28, 87도294) - 이승준 형사소송법 882p